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
제 권 판 결

사 건 2005카공 12 공시최고

신청인 이준석

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2-5

판결선고 2005. 8. 22.

주 문

다음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다음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5. 5. 4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5. 8. 22. 14: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5년 8월 22일

판사 노태현

증서의 표시

- 종 류: 약속어음
- 액 면: 금50,000,000원
- 번 호: 자가05178567
- 발 행 인: 합자회사 가치상사
대표사원 오상호
- 발 행 일: 2004년 10월 30일
- 지 급 일: 2005년 4월 30일
- 지급장소: 주식회사 국민은행 거창지점
- 최후소지인: 이준석(분실인)